

사업실명제 등록번호	2021-40	담당부서 작성자	산업안전보건연구원 / 역학조사부 (서회경 차장/052-703-0872/ class22@kosha.or.kr)
사업명	직업성질환 역학조사		
사업개요 및 추진경과	○ 추진배경 :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,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실시 ○ 추진기간 : 1992.01.18. ~ 계속 ○ 총사업비 : 1,641백만원 ○ 주요내용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(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)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역학조사 수행 * (제1호) 사업주/근로자대표/보건관리자/건강진단기관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(제2호)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(제3호) 공단이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(제4호)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○ 추진경과 - 1992.01.18. : 산업보건연구원 개원→직업병진단센터에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업 시행 - 1997.01.01. : 직업병진단연구센터(부서명 변경) - 1998.11.18. : 산업안전연구원과 산업보건연구원 통합→직업병 연구센터(부서명 변경) - 1999.01.01. : 산업역학조사팀 설치(경남 창원시 소재) - 1999.02.08. : 역학조사 수행 법적근거 마련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(역학조사) - 2005.01.01. : 산업역학조사팀 폐지→직업병연구센터(업무이관) - 2012.01.01. : 직업건강연구센터(부서명 변경) - 2014.01.01. : 직업건강연구실(부서명 변경) - 2017.01.01. :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(부서 신설) - 2017.09.01. :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중부권역학조사팀(부서 신설) - 2009~2019년 :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역학조사 수행을 통해 반도체 제조업 임발생 위험 관리 및 능동적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 - 2020년 ~ : 위험군에 대한 역학조사 활성화로 직업성질환의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를 목표로 사업 지속 추진		

